■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09-344.
http://doi.org/10.17948/kcs.2019..83.309

고문헌에 나타나는 자[上]의 용례와 문서 보관제도

권이선(權二宣)*

목 차

1. 머리말
2. 고문헌에서 보이는 上자의 의미와 용례
3. 문서 보관형태와 보관처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틀어 널리 사용된 상(上)이라는 한 글자를 고찰함으로써 당대 문서를 보관하고자 한 의식이 글자에 남아 있는 흔적을 살펴 본 글이다. 기존 상(上)의 의미는 ①높다 ②올리다, 진헌하다 ③처소격조사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한문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특정 문안과 관련해 상(上)은 자[上]로 발음되며 "보관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두로 사용됐다. 이는 연대기사료, 고문서, 의궤, 등록 등 다양한 사료에서 확인 된다.

보관이라는 의미로 쓰인 上[자]는 官上[관자], 校上[교자], 營上[영자], 紙筒上[지동자], 院上[원자] 등 '보관처+上'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표현은 모두 문안을 보관할 구체적인 보관처와 상(上)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방식이다.

조선시대 모든 문안이 관부에 보관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관념적으로는 보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박사과정.

의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上[자]라는 글자로 표현됐는데 이 쓰임은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上[자]가 보관의 의미로 사용된 문헌은 ①조직 및 운영의 성격 ②개인의 권리 혹은 신원 증명 ③민정과 관련하여 풍습상 긴요한 사안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방관아에서 문서 보관과 관련해 紙筒[지동]과 葉作[엽질]은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엽질과 上은 후일에 증빙의 목적을 가진 자료를 보관할 때 쓰였다. 따라서 上과 보관처는 불가분의 관계로 지방 관아의 지동에 보관된 엽질은 주로 활용 문서로 보관형태는 ①원본 문서를 점련한 형태 ②원본을 등서한 등록 형태로 구분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이두서식집과 다양한 고문헌에 나오는 자[上]의 실례를 바탕으로 상(上)이 이두자임을 밝혀 그 의미 및 조선시대 문서 보관제도의 단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상(上)이 때론 上[자]로 인식됨을 알아야 결국 葉作[엽질]과 紙筒[지동], 官上[관자] 등 조선시대 다양하게 쓰인 문자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자[上], 이두, 조선시대 문서보관, 지동[紙筒], 엽질[葉作].

1. 머리말

예로부터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표현했다. 따라서 글자 안에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의 결과물이 집약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대 사용된 어휘 안에서 관습과 제도, 사회 및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언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해 내려오길 우리나라는 소리가 있었지만 글자가 없어 중국의 문자를 빌려 통용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두를 꼽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두는 주로 문부(文簿)와 서첩(書牒) 등 글귀를 떼는 곳에 토를 달아 아전들이 관청에 보고하기 편한 용도[1] 외에도 新反[새로이]・更良[가새아] 같은 형태를 띠었다.[2] 이처럼 주로 공용문서에서 두루 쓰인 이두는 조신식 한문이었다.[3]

1) 李圭景, 「經傳雜說」, 『五洲衍文長箋散稿』.
2) 丁若鏞, 『牧民心書』 奉公 제4조 文報.
3) 여기서 조선식 한문이란 정격한문 외 변격한문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변격한문은 이두식 한문 외 광개토대왕비문 같은 한문정착 초기 작품, 조선 후기 야담집 내의 한문단편, 배해체(俳諧體) 문장, 서간(간찰)에서 고유한 어휘를 사용하는 변형된 문장 형태 등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다. 심경호, 「이두식 변격한문의 역사적 실상과 연구과제」, 『어문논집』 제57호, 민족어문학회, 2008.

그러나 조선시대 관·사문서에서 이두가 활발히 사용된 것에 비해 아직 그 다양한 용례가 정리되지 못했다. 본고에서 살펴 볼 관자[官上]라는 용례 역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 시기를 통틀어 사용됐으나 그 사례가 소개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연대기 사료 및 고문서에서 官上가 오역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4] 이는 上이 이두로써 기능함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5]

한 어휘에는 이 어휘가 사용되기까지의 역사적 맥락이 담기기 마련이다. 上 또한 비록 하나의 글자이지만 이 글자의 고찰을 통해 '조선시대 문서 보관제도'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이두 분야 연구에서는 이두의 용례만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글자의 역사적 고찰과 문서보관제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지 못했고, 조선시대 기록물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로 전근대 기록관리 체계와 실록편찬과 관련한 법전 규정, 제도 연구[6]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군현 단위에서 작성된 문서의 보관이나 왜 보관하였는지 그 의식에 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7]

---

4) 『비변사등록』 순조 7년 1월 기사에서 '효주관자[爻周官上]'를 '관상(官上)이라는 글자에 효주하여'로 풀이하였다. 자[上]를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로는 『일성록』 정조 2년(1778) 4월 5일 기사가 있다. 일반적인 한자어로서 '올리다'로 번역된 경우는 『일성록』 정조 2년(1779) 4월 6일; 『일성록』 정조 11년(1787) 4월 5일; 『비변사등록』 정조 11년(1787) 4월 17일 기사와 한국학자료센터에 게시된 「1789년 화원목 입안」 해제도 '엽질을 관에 올렸다고[葉作官上]'로 해제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39: 해남 김해김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이외 최근 김덕수 외, 『해남 해남윤씨 고문서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에서 「1664, 1655, 1666년 해남현 사급입안」에서도 '올리다'로 번역하였다.

5) 박성종은 『조선초기 고문서 이두문 역주』에서 「1481년 상원사 입안」을 소개하면서 上자가 상원사에서 보관한 문서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낙산사에 발급해준 문서에는 '上院寺上' 대신에 '洛山寺上'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따라서 上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았다. 다만 〈표2-2〉 6번 문서에서 쓰인 上은 '붙인'으로 역주하였고, 3번 東部上의 上자 쓰임은 매우 특이하다고 해제하였다. 그러므로 上자에 '보관'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인지하는 한편 이두로 사용됨을 포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6) 윤훈표, 「조선초기 공기록물 관리제의 개편」, 『기록학연구』 제2호, 한국기록학회, 2000; 이경용,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2; 김현영, 「조선시대의 문서와 기록의 위상: 사초, 시정기에 대한 재검토」, 『고문서연구』 제32호, 한국고문서학회, 2008; 오항녕, 「실록의 의례성에 대한 연구: 실례와 상징서의 형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26집, 조선시대사학회, 2003;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제17호, 한국기록학회, 2008.

7) 이한희, 「조선시대와 현행 기록물관리제도의 비교분석」,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6; 김태웅, 「갑오개혁 전후 지방공문서관리의 변화」, 『규장각』 제23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김현영,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고문서연구』 제28호, 한국고문서학회, 2006.

이에 본고에서는 문서 보관제도와 관련이 깊은 上이라는 글자의 사례와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군현에서 작성되어 보관되던 문서와 왜 보관하였는지 그 관념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문서 보관제도에 대한 이해의 단초로 삼고자 한다.

2. 고문헌에서 보이는 上자의 의미와 용례

1) 上의 발음과 동의자(同義字)

상(上)이라는 글자는 우리나라에서 '상', '자', '차' 세 가지로 발음되었다. 일반 한자어로써 쓰일 때는 '상'으로 발음하며 '높다, 올리다'라는 의미 외에도 처소격 조사로도 사용된다. 예컨대 노상(路上)은 길 위라는 뜻이 아니라 '-에, -가'라는 의미로 '길가, 길바닥'이라는 뜻이다. 還上, 捧上[8], 外上는 모두 '자'로 발음[9]했는데 '-에 납부하다, 받아들이다, 물건값을 치르기로 하고 사다'라는 의미다. 城上은 궁전이나 관아에서 귀중한 물품을 지키던 사람을 가리키며 정자, 잡자로 읽는다. 上下로 쓰일 때는 '차하'로 읽었는데 '지불·지급, 치러주다'는 뜻이다.[10]

이처럼 상(上)을 자[上]로 음차 하는 사례로 還上[환자], 捧上[밧자], 外上[외자], 城上[정자] 외에도 '紙筒上[지동자]'를 들 수 있다. 장세경은 이를 '서류를

8) 조계영은 박병호와 안병희의 연구를 근거로 捧上[받ᄌᆞ]를 두 글자의 한자로 차자하려면 '받ᄌᆞ'에 해당하는 '捧'에, '올리다·바치다'의 뜻이 있는 '上'을 붙인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올림을 받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올린 물건을 자신의 수중에 둔다는 것이므로 上에 藏置로 의미가 변화되어 수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타당한 연구이나 결국 上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올리다'에 주목해 단순 한문투인 접미사로 봤다. 그러나 과연 上자가 한문투로 사용되어 오다 의미가 부여된 글자인지 고유의 표현이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특히 이런 견해는 捧上 외 外上, 上下에 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김동석은 上은 한문식으로 쓰인 표현이 아니라 고유 이두로 봤다.

9) 홍기문은 환자[還上], 받자[捧上], 외자[外上]의 上자가 본래 還子, 捧子, 外子 즉 子라는 글자에서 나왔다는 견해에 대해 일축하며 자[上]는 상(上)의 이두음으로 보았다. 홍기문, 『리두연구』, 한국문화사, 1957, 100-101면.

10)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1, 106면; 최동언, 『조선식한문연구』, 사회과학원, 2009, 92면;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보고사, 2014, 246-248면; 박성종, 『조선전기 이두연구』, 역락, 2016, 140-141면.

넣는 봉투'로 풀이[11]하였고, 오창명은 '관에 보관하는 기록장부'라는 뜻으로 풀이하면서 『이문잡례』에서 형태만 확인될 뿐 처음 확인된 경우로 광산김씨 고문서 입안6을 예시로 들었다.[12] 그러나 이밖에 고문서, 의궤, 문집 등에서 사용된 실례를 살펴보면 紙筒上에서 上은 별도의 뜻으로 풀이된다.

紙筒上의 발음표기는 『유서필지』·『이문잡례』·『공사항용록』에서 확인된다.

〈표 1〉『유서필지』·『이문잡례』·『공사항용록』에 실린 上자의 발음

서 명	내 용	발 음
『유서필지』	紙上葉作, 亦爲依此辭入錄, 無此則爲違格	지자
『이문잡례』	紙筒上葉作, 亦爲依此辭入錄, 無此則爲違格	지동자
『공사항용록』	紙筒上葉作, 亦爲依此辭入錄, 無此則爲違格	지동자

공통적으로 세 책에서 上은 자로 발음하였다. 모두 매득사출식에서 보이는데, "지통에 보관하는 엽질에도 또한 이 내용대로 기록한다. 이 지통에 보관하는 엽질이 없으면 위격이다"라고 하였다.[13] 『이문잡례』와 『공사항용록』은 표기가 같으므로 『유서필지』와 『이문잡례』만을 대표하여 비교·대조하면 『유서필지』의 紙上이 곧 『이문잡례』의 紙筒上이다.

지(紙)와 지동[紙筒]이 같은 의미라면 紙筒上[지동자]는 곧 지동(紙筒)과 자[上] 두 단어로 나눠진다. 여기서 紙筒[지동]은 글자대로 문안을 보관하던 공간 혹은 문안을 담을 수 있는 특정한 궤와 같은 형태로 생각된다. 즉 紙筒上[지동자]란 '지동이라는 문서 보관처+보관하다'라는 어휘가 결합된 것이다.

이두서식집을 통해 19세기에는 上자가 '보관'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일반한자어가 아닌 이두어로서 上[자]로 발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4] 그러나

---

11) 장세경, 앞의 책, 307면.

12) 오창명은 '아뢰오는 것은, 저희들이 진술 안에, 관의 지동자에, 같은 날 원고가 지난해 11월 持來한 문기를 取考한 즉 (…)[白等汝矣招內, 官紙筒上元告上年十一月持來文記取考, (…)]'으로 풀이하였다. 오창명, 「조선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103-104면.

13) 전경목, 『유서필지』, 사계절, 2006, 358-359면.

14) 박성종은 城上의 발음을 설명하면서 上이 '자'로 읽히는 것은 이두에서 일반적인 독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還上, 外上, 捧上의 경우도 보관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아도 上을 자로 발음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上'이 '보관'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만 '자'로 읽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음을 上[자]로 명명하기는 어렵다.[15] 다만 본고는 우선적으로 '보관'이라는 뜻을 내포한 上을 자로 발음함으로써 기존에 쓰인 上자와는 구분 짓고자 한다.

보관의 의미로 쓰인 上자의 동의어는 영조와 정조가 사망한 뒤 국장절차를 기록한『영조국장도감의궤』·『정조국장도감의궤』이방의궤 품목질(稟目秩)에서 살필 수 있다.

『영조국장도감의궤』 1. 본방에서 담당하는 길의장은 품달한 내용대로 의장고(儀仗庫)에서 있던 것으로[以儀仗庫所上], 쓰던 의장을 가져와서 직접 살펴보았다고 하기에, (…)[一 本房次知吉儀仗, 依稟辭, 以儀仗庫所上, 行用儀仗取來, 親自看審是如乎, (…)]

『정조국장도감의궤』 1. 길의장은 품달한 내용대로 의장고(儀仗庫)에서 있던 것으로[以儀仗庫所在], 쓰던 의장을 가져와서 살펴보니, (…)[一 吉儀仗, 依稟辭, 以儀仗庫所在, 行用儀仗取來, 看審是乎則, (…)]

두 의궤는 "왕실 의장에 쓰이는 길의장은 의장고에서 보관하였고 이를 가져와서 살펴봤다"는 내용으로『정조국장도감의궤』는 의장고에 있었다는 의미로 재(在)자를 사용했다. 반면『영조국장도감의궤』는『정조국장도감의궤』와 달리 상(上)자를 사용했다. 한 곳은 재(在)자로 표기하고 다른 한 곳은 상(上)자로 기록하였는데, 이 한 글자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이를 통해 18세기에 재(在)와 상(上)이 같은 의미로 통용됐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승정원일기』에서도 보인다. 1792년(정조 16) 조정진(趙鼎鎭)이 윤성열(尹聖烈)이란 인물이 초문(招問) 받은 사건을 아뢴다. 당시 윤성열과 김옥정(金鼎玉) 사이에서 소송이 발생하였는데 그 개요는 김옥정이 몰래 윤씨 집안의 입안과 상고할 만한 문적을 훔쳐내서 자신이 윤씨 집안의

15) 배대온은『이두어휘론』에서 捧上의 "上자는 상중고한음을 'djang/dziang'(周)로 재구하였으니, 이는 上자의 聲母字를 狀으로 본 것이다. 이같은 狀母가 한국한자음으로 반영될 때는 'ㅈ'이 함께 'ㅊ'으로도 반영된다"며 上은 자/차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배대온,『이두어휘론』, 형설출판사, 1993, 108-109면. 그러나 이는 捧上의 사례이며 중세국어에서 사용된 음차를 현재 알기 어렵고, 본고는 음차를 밝히는 논문은 아니므로 선행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외손이라고 주장하며 위조 별급문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 중에 김옥정의 간사한 정상이 탄로 나 그는 형배(刑配)되었고, 문안은 본현의 지통 안에 보관되었는데, 이후 50년간 거주하는 백성들이 서로 자기 물건으로 삼아 팔고사고 하여 윤성열이 추심(推尋)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조정진은 계쟁 대상지가 윤씨 집안의 토지인 듯하지만 이미 문적은 가져다 보기 어려운 형편이고 또 그렇다고 하여 윤성열의 말만 듣고 처리해주기도 어려우니 본도로 관문을 보내 문안을 고찰하자고 건의한다.16)

『승정원일기』에서 보이는 紙筒上를 기존 연구에서와같이 서류를 넣는 봉투 혹은 관에 보관하는 기록장부로 풀이하면 의미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나 이를 『국장도감의궤』에서 쓰인 재(在)의 의미 즉 “있다”로 풀이하면 문안이 본현 즉 “영유현의 지통(紙筒)에 있다”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으로 ‘-에 있었다’로 풀이하면 되는 것인가? 같은 시기 상(上)가 쓰인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확대해 보고자 한다.

1721년(경종 원년)에 노(奴) 자룡이 남양관에 올린 소지가 있다.17) 자룡의 옛 상전은 일찍이 남양관에 사는 최급에게서 비(婢) 성춘과 성춘의 소생 자녀 4구를 매득한 후 남양관에 사급(斜給)을 받았다. 그러나 옛 상전이 일찍 죽고, 현 상전은 아직 어려 그만 빗기[斜只]문서를 분실한다. 이에 자룡이 남양관에 소지를 올려 입지를 성급해달라고 요청한다.

노 자룡은 사급 문기를 분실하게 된 연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느라 언제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득인이었던 옛 상전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16) 『承政院日記』 정조 16년 윤4월 4일. “○出擧條 鼎鎭曰, (…) 本主尹聖烈, 日昨自鄕上來, 故招問委折, 則以爲此是海嵩尉立案築筒, 二百年收稅之地, 而壬戌年間, 其祖得麟 下去修築, 還到平壤地作故, 率去人金鼎玉, 偸出立案及可考文蹟, 稱以尹家外孫, 僞造別給文券, 相訟於永柔官, 奸情綻露, 至於刑配, 文案則本縣紙筒上, 而五十餘年之間, 居民之作爲己物, 轉相賣買, 猝難推尋云矣. 以此觀之, 則似是尹家之土地, 而文蹟旣未取見, 一邊之言, 亦難準信, 依前判付, 行關本道, 詳考文案, 査實狀聞, 何如?”

17) 박성호, 「조선시대 입안 발급 후 관아의 문서 존안 실태 검토」, 한국고문서학회 제220회 월례연구발표회, 2018년 12월 8일. 본 문서는 연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작성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서에 기재된 신축(辛丑)이라는 간지와 문서에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뒷면에 기재된 배사(背斜)가 1749년(영조 25)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본 소지는 최소한 1749년 이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1721년에 쓰인 소지로 추정된다.

현재 부안김씨 집안에 당시 매매의 모습을 대략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전준입안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전준입안과 노 자룡의 소지에 근거하여 시간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

> 1666년 7월에 최급으로부터 노비 매매(아버지 김문 代)→노비 매매 후 남양관으로부터 사급입안 받음→1721년 정월 17일 부안현에서 전준입안 받음(아들 김수종 代)→1721년 2월 남양관으로부터 입지를 요청하는 소지를 올림(아들 김수종 代)

현재 사급입안이 남아있지 않아 매매 후 언제 입안을 발급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매매 후 100일 이내에 사급입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1666년도에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처음 사급입안을 받고 55여 년이 지난 뒤에 남양관에 입지를 신청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특기할 점은 자룡이 '관사문기를 잃어버렸지만 당초 빗기를 받을 때 엽질(葉作)이 본부의 지통 안에 있으므로 지통 안에 소재한 엽질을 일일이 상고하여 입지를 성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남양관에서는 이에 응하여 입지를 성급해준다는 점이다.[19] 이 경우만 놓고 본다면 5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지방관부에서 관사문기와 관련한 특정 문헌을 보관한 것이다.

윤성열과 노 자룡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18세기 무렵 지방 관부에서 50년이 지난 사안과 관련하여 문안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뒷날에 사실 확인 및 재 증빙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경우다. 다시 말하면 지방관부는 특정 문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장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넘어 뒷날 고찰할 수 있도록 문서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전에서도 확인된다.

---

18) 전준입안은 부안현에 거주하는 김 진사(김수종)가 그의 노를 시켜 전준한 문서다. 부안현에서는 1721년(강희 60) 김수종이 제출한 문서, 즉 1666년(강희 5) 7월에 김수종의 아버지 김문이 노비 주 유학 최급으로부터 노비를 사고 받은 명문을 가져다 고찰하여 노비의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전준을 발급해 주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매매는 1666년에 이루어졌고 매득인은 김문이었다.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지류 27」, 『고문서집성』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97면. "(…) 官斜文記乙, 雖已見失, 而當初斜只時, 葉作必在於本府紙筒中是乎等以, 如是仰達爲白去乎, 同紙筒中, 所在葉作乙, 一一相考爲白良, 葉作文書的實是白去等, 各別論理題下立旨成給. (…)"

① 서울과 지방의 각 관사 노비 및 시노비(寺奴婢)의 도망 및 물고입안(物故立案)은 본도와 본관에 각각 한 건씩 관에 보관하고[官上], 한 건은 죽은 자의 친족[屍親]에게 주며 본조 및 호조・장예원에서는 정안(正案)을 마무리할 때 일일이 검토한다.[20]

② 원고・피고가 납부한 상고할 만한 문서는 관리가 감봉(監封)하고 원고・피고가 함께 착명하고 치부하여 뒷날 상고할 때의 증거로 삼는다. 결송한 후에 패소한 문권은 위조된 것이 분명하므로 정상이 나쁜 것은 관에 보관하여[官上] 봉하여 두고, 불태우는 것을 금단한다.[21]

①은 『신보수교집록』과 『증보전록통고』로 관사의 노비가 도망 혹은 죽었을 경우 입안을 3건 작성하여 본도와 본관은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죽은 자의 친족에게 주도록 하였다. ②는 『속대전』과 『전율통보』의 조목으로 소송 후 위조 문권이 확실하면서 그 정상이 좋지 못한 것은 관에 보관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모두 뒷날 참고하기 위한 조치로, 위 법전이 편찬되던 18세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다. 특히 ①조목은 조선 초 성종 대부터 거론된 내용이다.

제사(諸司)의 노비가 그 고역(苦役)이 싫어서 거의 모두 도망가고서, '물고(物故)하였다.'고 사칭하며, 그 인족(隣族)과 색리(色吏)들도 몰래 뇌물을 받고 일을 꾸미는데 서로 응하는데도, 중외(中外)의 관리들이 으레 아전의 손에 맡기고 전혀 살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물고한 자를 검시(檢屍)할 때에, 서울에서는 본사(本司)와 거주하는 부(部)의 관원이, 외방(外方)에서는 수령이 아전과 사령(使令)을 거느리고 친히 살펴서 일족(一族)과 겨린[切隣], 그리고 이내(里內)의 색장(色掌) 등에게 명백히 공초(供招)를 받아 입안(立案)하여, 3건을 기록해서 비치하되, 1건은 본도(本道)의 관찰사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1건은 해당 관사(官司)나 해당 관에 보관해 두고, 1건은 죽은 자의 친족[屍親]에게 주어서 후일의 참고에 증빙할 것이며, 그 실정을 알면서도 용인하여 누락시켜 준 일족(一族)과 겨린[切隣]・색장・색리 등은 사면령이 내려져도 죄를 사면해주지 말고, 전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며, 관리는 율(律)에 의하여 중히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경역(京役) 노비의 봉족(奉足)은 외방에 사는 비자(婢子)로서 정해 주어 항식(恒式)을 삼도록 명하였다.[22]

---

20) 『新補受教輯錄』 刑典 公賤 甲寅事目; 『增補典錄通考』 刑典 公賤 新補受教. "京外各司奴婢及寺奴婢, 逃亡・物故立案 本道・本官, 各一件官上, 一件給付屍親, 本曹及戶曹・掌隷院, 正案磨勘時, 一一考準."

21) 『續大典』 刑典 聽理; 『典律通補』 刑典 聽理 山訟附 所納可考文書. "元告・元隻所納可考文書, 官吏監封, 元告・元隻同着名置簿, 以憑後考, 決訟後, 落訟文券, 僞造的實, 情狀可惡者, 官上封置, 燒火者, 禁斷."

성종 3년(1472) 3월 23일의 기사에 따르면 노비들이 역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거나 죽었다고 거짓으로 속였으나 이를 외방 관리들이 관리하지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비가 죽게 되면 일족, 겨린, 색장 등에게 공초를 받아 입안 3건을 작성하고 비치하여 뒷날 증빙하도록 하였다.

실록에서는 이를 장(藏)자로 표기하였다. 15세기에 거론된 이 조치는 훗날 『신보수교집록』 및 『증보전록통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전에는 요약되어 "本道·本官, 各一件官上"으로 정비되었다. 이를 통해 장(藏)과 상(上)도 동의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 上의 용례와 보관의식

법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특정 문서를 해당 관할 지역 혹 담당 관청 및 상위 기관에 보관하도록 한 전례는 다양하다. 『嘉林報草』를 보면 1740년(영조 16) 임천군수 박용수(朴龍秀)가 본군 동변면 칠산리에 거주하는 원도막쇠(元道莫金)의 죽음과 관련해 검시하여 순영에 첩보한다.

> 죽음에 이른 수업양인(水業良人) 원도막쇠(元道莫金)는 법에 의거하여 검험한 후에 지자호(地字號) 시장(屍帳) 3건(件)에 상처를 일일이 기입하여, 1건은 시친(屍親)에게 주었고, 1건은 관에 보관하고, 1건은 점부(粘付)하여 관찰사께 올려 보냈습니다.[23]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신보수교집록』·『증보전록통고』, 『성종실록』과 같은 구성으로 임천군수가 죽은 원도막쇠를 법에 따라 검험(檢驗)한 후 시장(屍帳) 3건(件)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법전과 연대기 사료에 근거하여 살펴보

---

22) 『成宗實錄』 16권 성종 3년 3월 23일. "一 諸司奴婢厭其苦役, 率皆逃避, 詐稱物故, 其隣族·色吏亦陰受賄賂, 符同相應, 中外官吏, 例假吏手, 專不致察. 今後 物故檢屍時, 京則本司及所居部官員, 外則守令, 率領前·使令親審, 一族·切隣·里內色掌等, 明白取招立案, 備錄三件成置. 一件藏於本道觀察使, 一件藏於其司其官, 一件給付屍親, 以憑後考. 其知情, 容漏一族·切隣·色掌·色吏等, 勿揀赦前, 全家徙邊, 官吏依律重論. 從之. 命京役奴婢奉足, 以外居婢子定給, 以爲恒式."

23) 『各司謄錄』 嘉林報草 2 경신 정월 12일. "致死人水業良人元道莫金, 依法檢驗後, 地字號屍帳三件良中, 傷處一一書塡, 一件給付屍親, 一件官上, 一件粘付上使爲在果. (…)"

면 위 첩보에 사용된 上은 '관에서 보관하다'는 의미다. 유사한 예로 1760년 만경현령이 비 춘단(春丹)의 죽음과 관련하여 검안서 3건을 작성하여 한 건은 죽은 이의 친족에게 발부하고, 한 건은 관에서 간직하고, 나머지 한 건은 다른 문서와 이어 붙여 감영에 보낸 경우가 있다.[24]

> 을사년 2월 11일
> 모두 각 사람 등의 초사라고 하였기에 위 죄인 장용선(張龍先)이 병으로 인해 죽은 것이 확실하므로 우자(宇字)호 시장 두 건을 성출(成出)하여 한 건은 관찰사에게 바치고, 한 건은 관에 보관하며 (…)[25]

이는 충청도 감영에 접수된 장계로 장용선이라는 죄인이 병사하자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초사를 받고, 한 건은 관찰사에게 바치고 다른 하나는 해당 관에서 간수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上은 이두로 쓰였다. 만약 上이 이두가 아니라 '올리다'라는 의미라면 검시를 시행한 지방관이 상부 관청인 관찰사에게 결과를 보고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어느 관청에 올렸다는 것인지 수신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체계를 고려해도 지방관이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중앙기구에 보고하는 체계가 일반적이다.

다만 이 예는 검안을 작성하되 3건이 아닌 2건만을 만든 경우다. 그러나 시친인에게 주지 않았을 뿐 관에서 관리해야 할 문건은 만들어 둔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같다. 이처럼 2건을 만들어 관에서 간직하도록 한 사례는 18세기 뿐 아니라 19세기 자료에서도 확인된다.[26] 1867년(고종 4) 공충도관찰사 겸 순찰사는 죄인 맹봉열(孟鳳烈)을 검험한 후 천자호(天字號) 시장(屍帳) 2건을 작성하여 한 건은 관에 두고, 한 건은 관찰사에게 올려 보냈다고 첩보한다.[27] 이처

---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보장 1」, 앞의 책, 1988, 431면. "實因段, 以捧臂致死縣錄, 屍帳三件良中, 天字號書填, 一件給付屍親, 一件官上, 一件粘付上使爲在果 (…)"
25) 『各司謄錄』 京畿道篇 6 을사 2월 11일. "爲等如, 各人等招辭是置有亦, 同罪人張龍先, 因病物故的實是乎等以, 宇字號屍帳兩件成出, 一件上使, 一件官上爲乎旀 (…)"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계 3」, 『고문서집성』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278-279면. "죄인 김돌작(金乭作)이 병으로 인해 죽은 것이 확실하므로 황자호(黃字號) 시장(屍帳) 2건이 작성 하여 한 건은 관에서 보관하고 한 건은 부사에게 올린다.[黃字號屍帳兩件成出, 一件官上, 一件上使爲乎旀 (…)]"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계 1」, 앞의 책, 1992, 274-275면. "上項罪人孟鳳烈屍身檢驗後, 天字號

럼 검험을 한 후 시장(屍帳)을 만들어 관에서 보관하도록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2-1〉 시장(屍帳) 보관 사례

연번	문서명	내용
1	1761년 예산현감 결사(決辭)	모두 각 사람들의 초사이기에, 죽음에 이른 오금산 시신을 전례대로 초검한 후에 율자호(律字號) 시장(屍帳)을 3건 만들어 한 건은 관에서 보관하고 한 건은 시친에게 주며, 한 건은 점련하여 관찰사에게 올리거니와[28]
2	1837년 공주판관 첩보(牒報)	실제 사망원인은 병으로 인해 죽은 것이 확실하므로, 홍자호(洪字號) 시장(屍帳) 2건을 만들어서 1건은 관찰사에게 올리고, 1건은 관아에 보관하는 연유를 첩보(牒報)하였습니다.[29]
3	1867년 공충도 관찰사 장계	모두 각 사람들의 초사이기에, 위 죄인 김회연(金會連) 시친을 검험한 후에 이자호(邇字號) 시장(屍帳)을 두 건 만들어 한 건은 관에서 보관하고 한 건은 관찰사에게 올린 첩정입니다.[30]
4	1868년 공충도 관찰사 관(關)	모두 각 사람들의 초사이기에, 위 죄인 곽응종(郭應宗) 시친을 검험한 후에 천자호(天字號) 시장(屍帳) 두 건을 만들어 한 건은 관에서 보관하고, 한 건에 관찰사에게 올린 첩보입니다.[31]
5	1868년 공충도 관찰사 관(關)	모두 각 사람들의 초사라고 하였기에, 위 죄인 정승노(鄭昇魯)가 병으로 인해 죽은 것이 분명하므로 광자호(光字號) 시장(屍帳) 두 건을 만들어서 한 건은 관에서 보관하고 한 건은 관찰사에게 올린 첩정입니다.[32]
6	『고문서집성』 05 발사 2	지자호(地字號) 시장(屍帳) 3건을 인출하여 한 건은 시친에게 주고, 한 건은 관에서 보관하며, 1건은 아울러 수도성책(囚徒成册)을 작성하여 관찰사에게 올린다.[33]
7	『고문서집성』 05 발사 4	현자호(玄字號) 시장(屍帳) 3건을 작성하여 한 건은 시친에게 주고, 한 건은 관에서 보관하며 한 건은 점련하여 부쳐 관찰사에게 올린다.[34]
8	『고문서집성』 05 발사 5	모두 각 사람들의 초사이기에, 위 죽음에 이른 유춘흥 시신을 드러나고 밝은 곳으로 내보내 법과 같이 세엄(洗罨)하여 상세히 검안 후 황자호(荒字號) 시장(屍帳) 3건을 성출하여 한 건은 관찰사에게 올리고 한 건은 관에서 보관하며 한 건은 시친에게 준다.[35]

屍帳兩件成出, 一件官上, 一件上使爲臥乎所, 牒呈是白置有亦 (…)"

28) 『各司謄錄』 烏山文牒 2 신사 4월 초4일. "爲等如, 各人等招辭是置有亦, 致死人吳今山屍身 依例初檢後, 律字號屍帳三件成出, 一件官上, 一件給付屍親, 一件粘付上使爲在果 (…)"

29) 『各司謄錄』 京畿道篇 6 정유 6월 18일. "(…) 實因段, 因病物故的實是乎等以, 洪字號屍帳兩件成出, 一件上使, 一件官上緣由牒報爲臥乎所 (…)"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계 1」, 앞의 책, 1992, 274-275면. "爲等如, 各人等招辭是置有亦, 上項罪人金會連屍身檢驗後, 邇字號屍帳兩件成出, 一件官上, 一件上使爲臥乎所, 牒呈是白置有亦 (…)"

31) 같은 책. "爲等如, 各人等招辭是置有亦, 上項罪人郭應宗屍身檢驗後, 天字號屍帳兩件成出, 一件官上, 一件上使爲臥乎所, 牒呈是白置有亦 (…)"

32) 같은 책. "爲等如, 各人等招辭是置有亦, 上項罪人鄭昇魯, 因病物故的實是乎等以, 光字號屍帳兩件成出,

검안을 작성하여 담당 지방 관아에서 보관하도록 한 법전의 규정과 그 실례를 살펴봤다. 조선시대는 검안뿐 아니라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안에 대해서도 문건을 작성한 후 관에 두도록 하였다. 1888년 거제부(巨濟府)에서 발급한 「구조라 양화망치 삼동 방폐절목(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36]에 耳匠[자귀장이]와 사공 그리고 沙格[곁꾼]의 막을 조성하는 것을 보장해주도록 절목 2건을 작성하여 1건은 관에 두고 다른 나머지는 각 해당 동으로 출급해주도록 하였다.[37]

고문헌에서 '보관'으로 사용된 용례는 주로 조직 및 운영의 성격을 가진 자료에서 자주 사용됐다. 1783년(정조 8) 흉년에 걸행 하는 유기아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휼전칙』은 윤음과 사목으로 구성되었다. 내각일력에 따르면 『자휼전칙』은 각도(各道)별로 사급되었고, 이에 각도의 장관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각각의 지역에 이를 보관하도록 한 건씩 내렸다.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2〉 내각일력 上[자] 사례

내각일력 官上[관재] 사례	
일시	내용
정조 7년 11월 14일	강화유사 정지검(鄭志儉)이 이번 달 11일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을 공경히 받아 강화부에서 소관 하는 중군경력・분교관, 화양첨사 등 각 관에서 보관하도록 한 건씩 사급함.
정조 7년 11월 18일	평안감사 이성원(李性源) 이번 달 11일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을 감영에서 보관하도록 1건을 내려 받아 평안도에서 관할하는 도사, 병사, 중군 등 각 관에서 보관할 1건 도합 110건을 일체 내려 보냄.
정조 7년 11월 18일	황해감사 심염조(沈念祖)가 이번 11일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을 감영에서 보관하도록 한 건을 내려 받아 황해도에서 소관 하는 도사, 병영, 수영 등 관에서 보관하도록 각 1건씩 도합 51건을 일체를 내려 보냄.

一件官上, 一件上使爲臥乎所, 牒呈是白置有亦 (…)"

3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사 2」, 『고문서집성』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871-874면. "地字號屍帳三件印出, 一件給付屍親, 一件官上, 一件並與囚徒成冊修正上使."

34) 「발사 4」, 같은 책, 881-882면. "玄字號屍帳三件成出, 一件給付屍親, 一件官上, 一件粘付上使是在果 (…)"

35) 「발사 5」, 같은 책, 883-884면. "爲等如, 各人等招辭是置有亦, 上項致死人劉春興屍身, 出置露明處, 如法洗冤, 詳細按檢後, 荒字號屍帳三件成出, 一件上使, 一件官上, 一件出給屍親爲在果 (…)"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조라양화망치삼동방폐절목 11」, 『고문서집성』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92-95면.

37) 같은 책. "(…) 新造時耳匠沙格等造幕一款, 使各其耳匠沙格等造據是遣, 勿侵各該洞之意, 如是成節目兩件, 一件官上, 一件出給各該洞爲去乎, 依此遵行, 永久毋替宜當事."

정조 7년 11월 20일	전라감사 조시위(趙時偉) 이번 달 11일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을 내려 받아 감영에서 보관하도록 1건을 사급 받고, 전라도에서 소관 하는 도사, 중군 등 각 관에서 보관하도록 한건씩 도합 110건을 내려 보냄.
정조 7년 11월 21일	원춘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이번 달 11일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을 감영에서 보관하도록 한 건을 내려 받아 강원도에서 소관 하는 도사, 중군 등 관에서 보관하도록 각 한 건씩 도합 34건을 일체 내려 보냄.
정조 7년 11월 27일	함경감사 이명식(李命植)이 이번 달 11일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을 감영에서 보관하도록 한 건을 내려 받아 함경도 감진사, 남병사・북병사 등 각 관에서 한 건씩 보관하도록 도합 84건을 일체 내려 보냄.
정조 7년 11월 29일	경상감사 이병모가 이번 달 11일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을 감영에서 보관하도록 1건을 사급 받아 경상도에서 소관 하는 도사, 중군 등 각 관에서 보관하도록 한 건씩 도합 108건을 내려 보냄.
정조 7년 12월 1일	통제사 이한창(李漢昌)이 이번 달 11일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을 감영에서 보관하도록 한 건을 내려 보내 통제사가 소관하는 도의 우후, 부산, 다대포 등 각 관에서 한 건씩 보관하도록 도합 26건을 내려 보냄.

내각일력의 기록을 통해 중앙에서 각 도로 사급되고, 다시 각 지역별로 분포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위 사례는 상부기관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경우이므로 官上을 지방관에서 올렸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자휼전칙』 외 다른 사목으로 사축서사목(司畜署事目) 중 양고방목식(羊羔放牧式), 각양사례(各搉事例), 밧자식[捧上式], 조강식(糟糠式)에서 문서를 보관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표 2-3〉 사축서사목의 上[자] 사례

항목	내용
양고방목식(羊羔放牧式)	1. 『거모장안(去毛匠案)』은 이미 현방(懸房)에서 수납(修納)하였으니 관인을 찍어[成貼] 紙筒[지둥]에 보관할 것.[38]
각양사례(各搉事例)	1. 지금 이 절목 외 변통하여 첨입(添入)해야 할 경우에는 구식례를 참고하여 편한대로 거행할 일. 구식례책은 紙筒[지둥]에 보관.[39]
밧자식[捧上式]	1. 가대(家垈)의 세전은 11냥 4전 8푼으로 임진년 9월 일에 도민들의 등장(等狀)으로 인해 포락복사(浦落覆沙)를 조사한 후에 세전 8냥 5전을 견감할 일로 품정(稟定)하여 합쳐 전 223냥 1전 4푼을 매년 8월에 실질 조사 후 수세할 일. 양안과 성책 및 도형은 별도로 수정하여 紙筒[지둥]에 보관.[40]
조강식(糟糠式)	양부(兩部)에서 경인년 9월에 동부(東部)의 첩보로 인해 제음(題音)한 내용에 이미 묘 부근의 곳을 부탁하였기에 1냥을 특별히 감하여 당상이 수결하였고, 매달 1냥씩 덜어 줄여주도록 하였으니 충분히 헤아려서 이로써 정하고, 전후 왕복한 문첩은 성책하여 紙筒[지둥]에 보관함.[41]

공통적으로 紙筒[지동]에 보관하도록 규정했는데 주로 세전(稅錢)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 참고하기 위한 용도이자, 새로 제정하는 규정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였다. 세전과 같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해 보관하도록 한 사례는 신천군수가 가곶집강(加串執綱)에게 발급한 전령[42]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은 농업을 국가의 효시로 삼았기 때문에 토지를 조사하고 재해 여부를 기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신천군수는 집강에게 재실 여부를 조사하여 성책한 뒤에 관에 납부토록 하는 한편 관에서도 이를 집강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조사하여 후록의 여러 조항대로 거행하도록 하고, 집강이 성책하여 관에 납부하면 신천군에서 보관하도록 하였다.[43] 이는 민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향후 고찰하고, 급재(給災)를 조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안은 관에서 참고자료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음 자료는 향교 노비전답안 중 완문으로 이러한 의식이 인지된다.[44]

지방 관학으로서 각 군・현마다 일읍일교(一邑一校) 원칙에 따라 설립된 향교는 곧 성현을 사모하는 공간이므로 향교 안의 노비와 전답 또한 어진 이를 기르는 수용(受用) 품목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노비와 전답이 이지러지기 마련이므로 이를 다시 재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안(田案)과 노비안(奴婢案)을 작성하여 각각 관과 향교에 보관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와는 별도로 관에서 보관할 전안(田案)은 중기에 두도록 하고 이를 관리할 담당

38)『司畜署事目』羊羔放牧式. “一 去毛匠案, 既自懸房修納, 成貼紙筒上.”
39)『司畜署事目』各攷事例. “一 今此節目外, 變通添入者, 叅考舊式例, 從便擧行事. 舊式例冊紙筒上.”
40)『司畜署事目』捧上式. “一 家垈稅錢十一兩四錢八分, 壬辰九月日, 因島民等狀, 浦落覆沙摘奸後, 稅錢捌兩伍錢, 蠲減事稟定, 合錢二百二十三兩一錢四分, 每年八月, 踏驗收稅事. 量案與成冊及圖形 別爲修正, 紙筒上.”
41)『司畜署事目』糟糠式. “兩部庚寅九月, 因東部牒報, 題音內, 既以墓所付近之地爲托, 則壹兩特減, 堂上手決, 以每朔壹兩式除減, 而十分叅量, 以此爲定是遣, 前後徃復文牒, 成冊紙筒上.”
42)「1891년(고종 28) 信川郡守傳令」(6책, 245748), 서울대 규장각 소장.
43)「1891년(고종 28) 信川郡守傳令」(6책, 245748), 서울대 규장각 소장. “檢田執灾, 即民國之大政, 固當十分審愼, 毋敢一毫疎忽是如乎, 今年段, 春雨均洽, 立種不失其時, 秋陽調和, 發穗亦無未盡, 田畓俱登, 而初庚之後, 雖有霖而如干有水沈之患, 莫過是川邊處而已. 田庫則以一年再耕, 本無給灾之法, 畓處之全不掛鎌者, 精實執灾, 修成冊來納是矣, 自官終當親審摘奸矣, 依後錄諸條, 惕念擧行, 毋至差誤犯科之弊, 宜當向事. (…) 一 踏驗後, 趁早成出衿記, 結民處, 這這派給是遣, 官上件 亦爲修成冊, 以納次.”
44)「1824년 예안향교 향교전답노비안」, 안동 예안향교 소장.

자도 명시하였다.[45] 결국 이 완문은 훗날에도 이 조목대로 준행되기를 바라면서 전안과 노비안을 재정비하게 된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령과 완문을 통해 어떤 사안일 경우 지방관아 혹은 지방의 공적기관에서 문권과 각종 안(案)을 보존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모두 공통적으로 민정과 관련되며 풍습상 중요하게 여긴 사안 중 후일에 참고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용도였다.

따라서 각종 절목에는 의례적으로 '앞으로 관에서 이를 보관하고 영구히 준행할 것'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뒤따른다. 1792년 장기향교(長鬐鄕校)에 보관된 「책지급잡물가첨급 절목(冊紙及雜物價添給節目)」은 향교에서 순영 및 진영에 바쳐야 할 온갖 잡물의 비용과 부족한 부분의 세금을 거두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였다. 이 절목은 두 건에 관인을 찍어 하나는 관에 두어 보관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향청에 두어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였다.[46] 전주향교 「전곡용하절목(全州鄕校錢穀用下節目)」은 표지에 校上[校上]를 기입하여 향교에서 보관할 절목임을 명시하였고, 말미에는 이 절목을 만들어서 한 건은 관에 두고, 한 건은 향교에서 보관하며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였다.[47] 특히 표지 혹은 내지(內紙) 안에 해당 서적을 보관하도록 上를 써 놓은 경우는 실제 현전하는 서원, 향교 등 각종 관청에서 보관해온 서적에서 쉽게 발견된다.

국보 제322-1호인 옥산서원[48] 소장 삼국사기에는 만력 원년(1573) 8월일 옥산서원자[萬曆元年八月日 玉山書院上]가 기입 되었을 뿐 아니라 인장도 찍혀있어 관리되어 온 서적임을 방증해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각종 절목 및

45) 「1824년 예안향교 향교전답노비안」, 안동 예안향교 소장. "完文. 邑之設校宮, 猶國之有大學矣, 慕聖養賢之, 揆則一也, 况此先賢絃誦之邦乎. 校中之田畓・奴婢, 本是慕聖之意, 養賢之需, 則至不輕而重也. 夫何年來, 散亂無統, 或爲私田, 或爲私奴, 弊到極處, 合有更張. 與鄕中僉君子, 披括田案, 收聚屬籍, 蔽一言曰 '無價還退'. 而人莫敢違, 今者亦知其所重者故也. 庚子以前, 屬之先天, 新書田案二冊・尾附奴婢案, 一則官上, 一則校上, 又別爲條目, 臚列[列]如左, 後之君子, 勿以我謂喜事, 一遵其條, 庶或有補於興學之萬一云爾. (…) 一 官上田案, 入於重記中, 遞等傳掌, 而體吏次知, 紙筒上爲齊."

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조라양화망치삼동방폐절목 11」, 앞의 책, 1998, 92-95면. "如是成節目, 成貼兩件, 一置官上, 一置鄕廳爲去乎, 依此永久遵行, 宜當向事."

47) 「全州鄕校錢穀用下節目」(14책 古4256-33), 서울대 규장각 소장. "(…) 故玆成節目, 一件官上, 一件校上, 俾爲永久遵行之地者."

48) 『삼국사기』(50권 9책), 옥산서원(경북 경주시) 소장(개인).

향교 소장 고문서에서 보이는 규정이 실제로 작용 되어 현전하는 서적에서 찾을 수 있는 上의 흔적이다. 이런 사례는 의궤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서적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고(司庫)의 서적에서 上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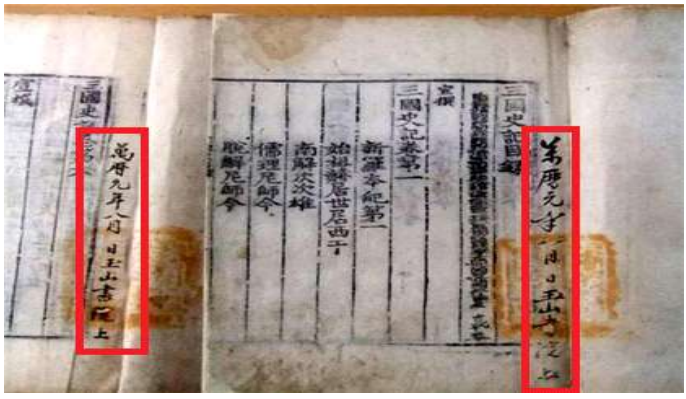

〈그림 1〉 옥산서원 삼국사기 자[上]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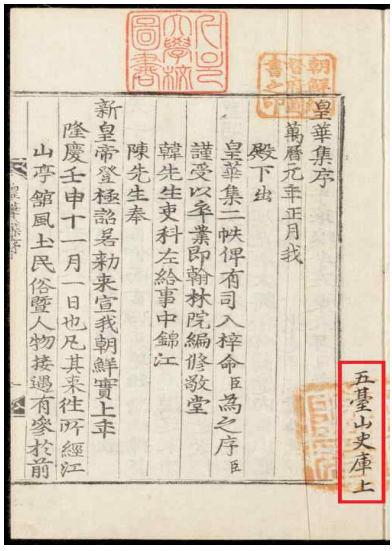

〈그림 2〉『황화집』 자[上]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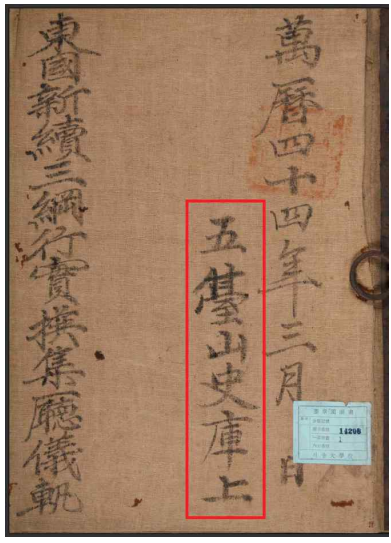

〈그림 3〉『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 자[上] 사례.

사고는 서적을 보관하는 기능과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五臺山史庫上[오대산사고자]는 '오대산 사고에서 올리다'가 아닌 보관하다는 의미로 봐야한다. 서원과 사고뿐 아니라 지동에서 보관하도록 이를 표지에 기입한 경우도 있다. 〈그림 4〉의 『순영방계의책(巡營房稧誼冊)』 표지에 기입된 지동자[紙筒上]에서 지동은 상부 기관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동에 올리다'라는 말은 어색하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지동의 의미처럼 서적, 문서를 보관하던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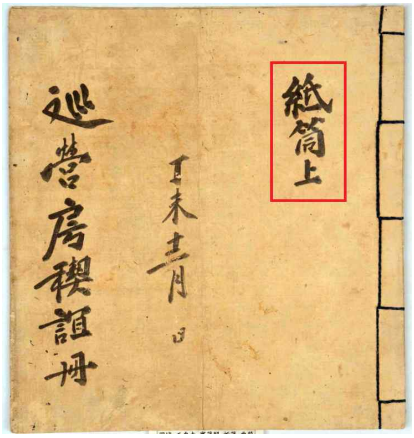

〈그림 4〉 옥천사 『순영방계의책(巡營房稧誼冊)』 지통자[紙筒上] 사례.

이외 경신년 3월에 하동관에서 보관하도록 한[官上] 「송계절목(松稧節目)」은 소나무 작벌을 금하는 절목으로 각 마을에서 반드시 돈후지(敦厚紙)에 정밀히 쓰고, 상부(上府)는 관인을 찍은 후에 내어 보내 마을마다 나누어 둠이 의당하다고 밝혔다. 또 한 건은 관에서 보관하고 한 건은 관인을 찍어 도로 내려 보내 빙고(憑考)하도록 하였다.[49]

이와 같이 官上[관자], 校上[교자] 등의 쓰임새는 강하게 '빙고'의 목적성을 띠는 것은 서리층과 관련이 깊다. 수령은 새로 부임하면서 바뀌는 동적인 존재인 반면 고을 읍속배들은 한 지역 안에서 직역을 세습·고착화 하는 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옥산서원 등록에는 "본 서원에 공적으로 속하는 것이 적지 않으나 본래의 등록 문안이 없어 새로 부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례배들에게 물은 뒤에야 특정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 폐단이 적지 않다"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50]

---

49) 「松稧節目」(규장각 M/F83-35-34-C), 서울대 규장각 소장. "此節目段, 自各村必以敦厚紙精書, 上府成貼後, 出送分置, 各村之地, 宜當者. 一件官上, 一件成貼還下, 以爲憑考之地爲齊."

50) 「옥산서원 등록」, 경주 옥산서원 소장. "本院共屬, 頗不尠. 凡日用雜物, 多有賴此, 而辦出者, 而所捧物件之多少, 素無謄錄文案. 故爲新任者, 必詢于下輩而後, 始知某物之出某處, 某數之多與少, 則聞問■處之際, 豈可無操縱增減之弊哉. 或減或增, 一利一害, 則不但恩怨之歸, 自此而判. (…)"

1777년(정조 원년) 「영양향교 절목(英陽鄕校節目)」에는 "향교 안의 서책은 관령이 아니면 문밖으로 나가지 못하며, 관에서 보관[官上]할 책수는 제때에 추심한다. 책의 권과 질이 혹 유루 된 것이 있다면 전수하지 않을 일.[51] (…) 절목 1건은 관에서 보관하여 낱낱이 빙고(憑考)할 일.[52]"이라고 규정하여 재무상황을 관이 주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좀 더 명확하게 관의 수령이 체직 된 이후의 상황을 규정해 놓은 사례가 있다. 옥산서원 등록에 "속안(屬案)은 조사하여 찾아내서 다듬고 부사가 체귀 될 때 답인(踏印)하여 한 건은 관에 보관하고 한 건은 서원에서 보관할 일."[53]이라고 제정하였다.

이처럼 官上[관자]는 일종의 용례가 되어 널리 쓰였는데, 주로 관문서 및 관의 행정 처리 과정 안에서 자주 발견된다. 따라서 감영에 보관할 경우에는 營上[영자], 서원에서 보관할 때는 院上[원자]로 사용되었다.[54]

이상 의궤, 실록, 승정원일기, 고문서, 등록, 법전을 통해 조선시대에 재(在), 장(藏), 상(上)이 문안과 관련해서는 의미상 동의어로 사용되었고, 그 풀이는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 증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봤다. 그럼 관부에서만 문안을 보관했을까? 다음 사례는 관부 외 지방 한 가문에서 권리 문서를 보관한 경우다.

> 갑자 5월 초 5일
> 지금 권귀태・서금용이 위조한 화회문기로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결송입안을 받은 후 이른바 斜只문서 두 軸을 견고히 봉하여 지통에다 보관한다.[55]

---

51) 「1777년 경상도 영양현 영양향교 절목」, 영양 영양향교 소장. "一 校中書冊, 非官令, 不得出門, 而官上冊數, 趁時推尋, 卷帙或有遺漏, 則不得傳受事."

52) 「1777년 경상도 영양현 영양향교 절목」, 영양 영양향교 소장. "一 節目一件官上, 以爲這這憑考之地事."

53) 「옥산서원 등록」, 경주 옥산서원 소장. "一 所屬案査出删定, 府伯遞歸時踏印, 一件官上, 一件院上事."

54) 김동석은 「葉作에 관한 一考察」, 『장서각』 제1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각주 23번에서 『유서필지』에 근거하여 上이 자로 발음되며 보관・보유의 뜻을 가진 이두라고 언급하면서, 官上・營上・郡上를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유서필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소개하는 데 그쳤고, 『유서필지』가 조선 후기 자료이기 때문에 자[上]라는 문자의 변화상과 용어의 역사적 의미 및 제도의 흐름을 놓친 한계가 있다.

이 문서는 전후 맥락이 매우 짧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다. 다만 경주손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권귀태, 서금용과 경주손씨 가문의 특정 인물 간에 소송이 발생했다고 짐작할 뿐이다. 계쟁 대상물은 알 수 없으나 소송이 끝난 후 '斜只[빗기]문서 두 축'을 보관했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일반적인 매매 대상물로서 인식되어서 주로 사급입안을 받았던 노비 혹은 토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56]

경주손씨는 소송이 끝난 후 자신들의 권원(權原)을 증명해줄 빗기문서 즉 사급입안과 결송입안을 지동에 보관하였다. 여기서 지동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지 의문이나 관아뿐 아니라 일반 민가에서도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지동이라는 특정 공간에 보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이 작성한 문서로 성우삼(成宇森)이 박영수(朴英秀)와 산송을 벌이면서 올린 등장이 있다. 관에서는 해당 소송에 처분하기를 '해당 리와 동임이 함께 금단하며, 도형(圖形)은 빙고하기 위해 관에서 보관하라[官上]'고 지시하였다.[57] 매매와 관련해서는 1789년(정조 13) 박준채(朴俊綵)가 환자를 납부할 길이 없게 되자 해남 산이도의 자호가 전(傳), 봉(奉), 입(入)자인 밭 곳을 홍석주(洪錫疇)에게 팔았다. 그러나 박준채가 아직 자신이 판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뒷날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홍석주는 밭의 주인과 증인, 필집에게 다짐을 받아서 관에 이를 보관하고 엽질은 사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58]

이러한 문서 보관의 관습 및 제도와 얽힌 上자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특정 짓기 어렵다. 다만 소지 및 준호구 등 고문서 자료에서 고려 말 조선 초에도 관아에서 문서가 보관되었음이 확인된다.

---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지 23-4」, 『고문서집성』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70면. "甲子五月初十日. 有今權貴太・徐今用 僞造和會文記落訟. 決立案後, 所謂斜只文書兩軸, 堅封紙筒上.

56) 柳馨遠, 『磻溪隧錄』 續篇 下. "今本國之俗, 則問人之富, 必以奴婢田地爲言."

57) 「成宇森等狀(山訟)」(17책, 430030), 서울대 규장각 소장. "(…) 與該里洞任, 眼同禁斷爲旀, 圖形段, 憑考次, 官上向事."

5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입안 2-2」, 『고문서집성』 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38면. "右謹陳所志矣段, 矣身, 海南山二道堰項居朴俊綵, 本牧還上, 至於數多, 萬無辦納, 其矣所居面珎山掌內, 傳字·奉字·入字等畓, 合拾斗落只, 給價四十兩, 本文記一張幷以, 買得是乎乃, 畓在於山二道珎山坪是白遣, 矣身則居在此處, 日後若或有紊亂之弊是白中置, 畓主與證筆, 捧侅音官上, 葉作斜出, 行下, 以爲憑後之地, 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표 2-4〉 고려 말-조선 전기 '보관'의 의미로 사용된 上 사례

연번	문서명	내용
1	1382년 이자수(李子脩) 조사첩(朝謝牒)	司上朝謝科準 司憲府錄事崔子霖 洪武十五年十一月日名帖 洪武十五年三月卄五日下 批李子脩爲通憲大夫判典儀寺事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印
2	1385년 장전(張戩) 소지(所志)	府官參逢音終喪■■課告不得仁同縣司良中 課告出食 官上爲遣 上京爲乎在而亦 持音文字及大帳等乙 宜當敎是則官上爲有臥 田出還給
3	1391-92년 화령부 호적	都評議使出納內 使所申已前京外大小兩班矣 戶口三年壹遞以成籍一件乙良 官上爲遣 一件乙良 各■(藏)是乎矣
4	1393년 최공(崔珙) 처 송씨(宋氏) 준호구(准戶口)	部上楊堤壹里 癸酉年戶口良中 獨女沃溝郡夫人宋氏乙 准爲內敎 (…) 東部上楊堤壹里 癸酉年戶口准…
5	1415년 장인숙(張仁淑) 호구입안(戶口立案)	右立案 狀告前郎將張仁淑所志內乙用良 同員及妻氏邊內外八祖戶口乙良 狀員所納持音戶口草件乙用良 傳缺郡上 去辛未年戶口帳憑考 斜只監踏印 狀員亦中 退向事 合行立案者
6	1444년 권준(權蹲) 준호구(准戶口)	漢城府准 本府上戊午年戶口帳內 (…)
7	1469년 상원사(上院寺) 사급입안(賜給立案)	右立案 節呈上院寺都事僧弘智所志內 寺上鹽盆稅及田地雜役減除亦敎傳旨相考 立案成給向事
8	1481년 상원사(上院寺) 입안(立案)	上院寺上 成化十七年八月二十四日內需司立案

모두 고려 말 조선 초 자료로 호구자료를 포함하여 관에서 발급하거나 제출받은 문서다. ①은 司에서 보관 중인 조사첩을 확인하여 이자수를 통헌대부 판전의시사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②는 장전과 이지태(李之泰) 사이의 전답송 소지로, 장전 자신이 지닌 문자 및 대장(大帳)이 분명하고, 이를 관에 보관하였으니 전출(田出)을 환급해달라고 호소하였다. ③은 14세기에 도평의사사가 호적을 새롭게 작성하자는 출납에 따라 성적(成籍)된 호적으로, 한 건을 관에 보관하고, 한 건은 각기 보관한다고 하였다. ④는 최공의 아내 송씨 준호구가 부에 보관 중인[部上] 「양제1리 계유년 호구」와 동부에서 보관[東部上] 하는 「양제1리 계유년 호구」를 의거했다는 내용이다. ⑤는 전 낭장(郎將) 장인숙의 소지 내용에 따라 장인숙과 아내 쪽 내외 8조 호구를 장인숙이 납부한 지니고 있어온 호구 초안[戶口草件]과 군에 보관 중[郡上]인 지난 신미년 호구 문서에 근거하여 살펴 빗기[斜只]하고 관인을 찍어 장인숙에게 준 것이다. ⑥은 한성부에서 비준(比準)하여 한성부에 보관 중인 무오년 호구장(戶口帳) 내용을 살핀다는 내

용이다. ⑦은 입안이라는 관의 공증문서 안에 상원사(上院寺)의 도사승(都事僧)인 홍지가 올린 소지가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소지에 따르면 절에서 보관하는[寺上] 염분세(鹽盆稅)와 전지(田地) 잡역은 덜어 없애라는 전지(傳旨)를 상고하여 입안을 성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⑧은 상원사에서 보관 하는[上院寺上] 성화 17년(1481) 내수사 입안이다.

이상 여말선초 자료에서 나타나는 上의 용례를 통해 조선시대 이전부터 개인의 권리, 권원 혹은 신원을 증명해주는 문서가 관에서 발급되었고 보관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증례를 통해 적어도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 시기를 관통하여 특정 문안에 대해선 관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일종의 규례 혹은 의식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관아에서 보관된 특정 문안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를 띠었을까? 『유서필지』에서 언급된 지동에 보관된 葉作[엽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엽질과 上은 무슨 관계인 것인가?

3. 문서 보관형태와 보관처

〈표 3-1〉 해남윤씨 사급입안에 나타나는 上[자] 사례

연번	문서명	내용
1	1623년 해남현입안[59]	(…) 二十五己亥生身乙 同人處 後所生幷以 永永放賣的實爲乎等以 後考次以 葉作粘連 斜給爲遣 合行立案者
2	1664년 해남현입안[60]	(…) 所生婢辛陽 同婢所生婢五月等 後所生幷以 永永斜給爲遣 以憑後考次以 葉作官上 傳准作退 合行立案者
3	1655년 10월 해남현입안[61]	(…) 節買得的實爲在 婢愛順亦中 後所生幷以 永永斜給 葉作官上 作退以憑後考次以 合行立案者
4	1656년 해남현입안[62]	(…) 同奴淳伊・淳生・奴路積等 後所生幷以 永永斜給 葉作官上 傳准作退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5	1658년 해남현입안[63]	(…) 前別坐尹仁美處 永永斜給爲遣 以憑後考次以 合行立案者
6	1663년 해남현입안[64]	(…) 後所生幷以 節買得的實爲在 權知學諭尹仁美處 斜給爲旀 以憑後考次以 兩度本文記良中 同婢等名付處 各各背爻後 葉作官上爲遣 合行立案者
7	1666년 해남현입안[65]	(…) 後所生幷以 節買得的實爲在 洪烈處 永永斜給爲旀 以憑後考次以 本文記杜伊叱間名付處 背爻葉作官上爲遣 行立案者
8	1671년 2월 해남현입안[66]	(…) 節名付處 背後爻周爲旀 葉作官上 作退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9	1671년 10월 해남현입안[67]	(…) 同婢後所生幷以 節買得的實爲在 尹正字宅奴愛順處 永永斜給 葉作官

		上 作退以 憑後考次 合行立案者
10	1674년 해남현입안[68]	(…) 其母仁介名付處 背頃爲旀 節買得人崔雪信處 後所生幷以 永永斜給 葉作官上 作退爲遣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11	1677년 해남현입안[69]	(…) 今此買得明文段 天雄決訟立案中則千應是如爲有矣 旣是蓮月之一所生明白 而音同字異乙仍于 同奴名付處 爻周背後 葉作官上 以憑後考次以合行作退 立案者
12	1679년 해남현입안[70]	(…) 尹仁美處 放賣的實是乎等以 末心末陽等段 其母名付處 背論爲遣 以憑後考次 葉作官上 合行立案者
13	1683년 3월 해남현입안[71]	(…) 買得的實爲乎等以 葉作官上爲遣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14	1683년 4월 해남현입안[72]	(…) 節買得人前 縣監尹爾錫處 永永斜給爲旀 同介德名付處背頃 以憑後考次 葉作官上爲遣 合行立案者
15	1709년 진도현입안[73]	(…) 上項婢愛壬身前后所生幷以 永永斜給爲遣 收養立案 背后爻周 葉作置簿紙筒上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16	1711년 해남현입안[74]	(…) 同海澤依所訴 尹奴必信處 立案成給爲遣 以憑後考次 葉作官上 合行立案者
17	1715년 해남현입안[75]	(…) 同切隣及面任處 更矣推問後立案成給 葉作官上爲遣 以憑後考次 合行立案者
18	1718년 해남현입안[76]	(…) 後所生幷以 狀者春望處 永永放賣的實乙仍于 同奴有先 祖母先化各付處 背頃爲旀 以憑後考次 葉作官上 永永斜給 合行立案者
19	1724년 해남현입안[77]	(…) 狀者處 放賣的實是乎等以 作葉官上是遣 以憑後考次以 立案成給者

5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노비매매명문 5」, 『고문서집성』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373면.
60) 「소지(입지) 49」, 같은 책, 106면.
61) 「노비매매명문 11」, 같은 책, 380면.
62) 「노비매매명문 12」, 같은 책, 381-382면.
63) 「노비매매명문 13」, 같은 책, 382면.
64) 「노비매매명문 14」, 같은 책, 383면.
65) 「소지(입지) 50」, 같은 책, 107면.
66) 「노비매매명문 15」, 같은 책, 385면.
67) 「노비매매명문 29」, 같은 책, 403면.
68) 「노비매매명문 18」, 같은 책, 288-289면.
69) 「노비매매명문 20」, 같은 책, 391면.
70) 「노비매매명문 16」, 같은 책, 386면.
71) 「토지매매명문 4」, 같은 책, 214면.
72) 「노비매매명문 22」, 같은 책, 394면.
73) 「노비매매명문 54」, 같은 책, 416면.
74) 「첩정 2」, 같은 책, 142면.
75) 「소지(입지) 56」, 같은 책, 113-114면.
76) 「노비매매명문 30」, 같은 책, 404면.
77) 「노비매매명문 35」, 같은 책, 409-410면.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에 내려오는 19건의 사급입안에서 엽질 혹은 葉作官上[엽질관자]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보인다. 표기 양상은 '뒷날 고찰하기 위해 엽질은 관에 보관하고 이에 마땅히 입안함'으로 끝맺는다. 그러나 2·3·4·8·9·10·15번은 葉作官上[엽질관자] 이후에 부기 사항이 기록되어, 葉作官上 傳准作退[엽질관자 전준질퇴], 葉作官上 作退[엽질관자 질퇴], 葉作置簿紙筒上[엽질치부지동자]가 표기됐다.

앞서 紙筒上[지동자]는 '지동에 보관하다'라는 뜻임을 살펴봤다. 또한 『유서필지』와 같은 이두서식집[78]에 따르면 엽질은 곧 엽질치부를 가리키므로 官上는 보관 공간을 광범위하게 관으로 설정한 경우이고, 지동자는 문서를 보관하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어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官上와 지동자가 의미상 같으므로 곧 '엽질치부 지동자'는 '엽질 관자'와 같다.

그렇다면 2·3·4·8·9·10번의 사례인 葉作官上 作退와 葉作官上 傳准作退는 무슨 의미일까? 본고에서 명확하게 엽질[79]을 논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점은 관에서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특정 문서에 대해 용도를 구별했다는 점이다.[80] 그 용도 구별이란 발급용과 보관용을 가리키는데 이를 전준질퇴라는 용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투식적으로 사급입안에는 뒷날에 고찰하기 위해[以憑後考次]라는 말이 따라 붙는데, 해남윤씨 사급입안의 傳准作退[전준질퇴]는 뒷날 고찰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다.

1번: 1623년 해남현입안 / 後考次以 葉作粘連 斜給爲遣 合行立案者
18번: 1718년 해남현입안 / 以憑後考次 葉作官上 永永斜給 合行立案者

---

78) 『유서필지』에 소주로 엽질은 곧 엽질치부임을 밝혔다.

79) 김동석은 여주이씨 독락당 소장 결송입안 13번에 나오는 엽질을 사례로 엽질의 성격을 ①관문서, 재판기록 ②입안 발급을 위한 증빙으로 나눴다. 그중 13번에 나오는 엽질에 관해서는 ②의 성격으로 구분했으며 증빙문서는 결국 입안에 점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입안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80) 권이선은 현전하는 결송입안의 형태를 바탕으로 원본형 결송입안은 보관용, 등출형 결송입안은 발급용으로 분류하였다. 권이선, 「조선시대 결송입안의 유형별 특징과 발급양상」, 『고문서연구』 제52호, 한국고문서학회, 2018, 205-232면.

2번: 1664년 해남현입안 / 以憑後考次 葉作官上 傳准作退 合行立案者
3번: 1655년 해남현입안 / 永永斜給 葉作官上 作退以 憑後考次以 合行立案者

위는 葉作粘連[엽질점련], 葉作官上 傳准作退[엽질관자 전준질퇴], 葉作官上 作退[엽질관자 질퇴], 葉作官上[엽질관자] 사례를 하나씩 추출한 것이다. 19건의 해남윤씨 사급입안 중 18건에서 葉作官上[엽질관자]가 반복되므로 엽질은 곧 관에 보관하는 용도로 정의 내릴 수 있다.

葉作官上 作退[엽질관자 질퇴]에서 作[질]은 문서를 가리키는 이두로 질퇴는 '문서를 물리다, 곧 문서를 돌려주다'는 행위로 이는 실제 사급입안 신청자가 받게 되는 문서이다. 그런데 2·3번 양자 간의 표기 방법을 비교하면 葉作官上 作退[엽질관자 질퇴] 사이에는 '전준'이라는 용어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서를 돌려주는데 이 문서는 전준 과정을 거친 문서인 것이다. 전준은 원문서의 부본을 만드는 행위이다.[81] 따라서 전준 받아 발급된 문서[傳准作退]란 원본 문서와 대조하여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사급입안의 실례를 살펴보면 '입안신청 소지+명문+초사1+초사2+입안'으로 구성되었다. 입안신청 소지와 명문은 입안 신청자가 작성하는 원문서이므로, 해남윤씨 사급입안에서 언급되는 전준 받아 발급된 문서는 곧 관의 증빙 조사 행위를 포괄하는 두 장의 초사와 입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해남윤씨 사급입안에서 반복되는 용어의 성격을 종합하면 엽질은 관에 보관하는 용도이고, 실제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전준 된 문서가 주어졌다. 18번과 2번의 표기를 비교해도 18번은 "엽질관자+영영사급" 2번은 "엽질관자+ 전준질퇴"이므로 영영사급과 전준질퇴는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그렇다면 전준 하여 문서를 발급해주는 관의 행위는 이 같은 관의 증빙이 지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1번 예시를 통해서는 관에서 보관하는 용도로 작성된 엽질의 형태가 점련된 형태로서 입안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사급입안과 유사한 형태를 띠었을 것으

81) 김현영, 「조선초기의 전준에 대하여—1469년 전양지 처 하씨 점련문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9호, 한국고문서학회, 1996.

로 추정되나 표기가 함축적이고 자료의 소량으로 인해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82] 그러나 이상의 사례를 통해 당시 관청 보관용과 발급용이 구별 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구별은 뒷날에 있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음이 확인된다.

이상 지동에 보관된 엽질은 조선시대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증빙해주기 위한 용도로써 보관된 특정 문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上이라는 글자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上은 기존에 인식되어온 한자어의 의미를 넘어선 조선식 한문이었다. 그러므로 上이라는 글자와 보관처는 불가분의 관계였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인수인계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중기(重記)에서도 확인된다.

〈표 3-2〉 중기에서 보이는 上[자] 사례[83]

자료명	기재방식
광주목중기	大學 1卷 以上新冊 甲辰趙等備上 大學諺解 1卷 以上新冊 甲辰趙等備上 訥齋集板 109立 鄕板上 趙等重刊 錦湖集 61板 鄕上
심도중기	兵學指南 2冊 營上 兵房色授 旗幟標伍坐具鎖金 辛亥備上 布帒柒箇內 肆斗入里參箇┐ 二去辛卯閔等備上 忠烈祠在 參斗入里肆箇」 長床柒坐 二去辛卯 閔等備上 鄕校在 加髹申禁事目 1卷 甲申來上 御製科幣厘正

82) 권이선, 앞의 글. 『우서』를 통해 지방관부에서 뒷날에 일이 있을 때 참조하기 위해 결송한 뒤에 창고에서 보관된 물건 추정컨대 소지類, 초사類 등의 문서를 모두 펼쳐 놓고 冊籍을 만들어 두었으므로, 冊籍의 형태를 원본형 결송입안의 형태 혹은 원본 소송 문서를 편철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보관용 사급입안의 형태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보관용 결송입안인 원본형과 유사한 점련형(해남윤씨 1번 사급입안 예), 『우서』의 예시처럼 편철된 형태, 『민장치부책』과 같은 초록의 형태 등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83) 남권희, 「중기자료 분석에 의한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기록관리」, 『사회과학』 제14집,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소, 2002; 조미은, 「19세기 해유문서와 중기에 관한 사례연구」, 『고문서연구』 제40호, 한국고문서학회, 2012; 남권희 외, 「조선후기 동래부의 래부중기에 수록에 기록물 분석」, 『서지학연구』 제60집, 한국서지학회, 2014; 남권희,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서지학연구』 제57집, 한국서지학회, 2014; 진유라, 「중기를 통해 본 호남지역 군현의 기록물 분석」, 『서지학연구』 제63집, 한국서지학회, 2015에서 『광주목중기』, 『심도중기』, 『이등내 고산현 중기』, 『경기감영각방중기』, 『훈련도감 중기』, 『래부중기』 참조.

이등내 고산현중기	詩傳 1卷 具諺解內 17卷 道東上 書傳 15卷 禮淵上
경기감영각방중기	雇馬廳人直三等馬及料節目 2件 1件紙筒上 京畿買得文記 24件 都封紙筒上 錢一千兩別備殖利放下節目 2件 1件執事廳在 1件紙筒上 庫舍十肆間自備新建家舍買得文記 2件紙筒上 衛後垈地參百間家舍買得文記 2件紙筒上 支放庫救弊節目 2件 1件備局上 1件*宣化堂上* 各邑地圖 1卷 紙筒上 道內地圖板 1 宣化堂上
훈련도감 중기	戎垣必備冊 1卷 辛未七月隨廳上
萊府重記[84]	文忠註義 1秩 5卷 鄕校上 已去庚子辛丑新加耕及陳還起幷錄冊 1卷 巡營成貼紙筒庫上 各面田畓行審冊 23卷 已去 丙子 李等內 書役所上 各面社倉稧畓參百玖拾參斗柒刀只 紙筒庫上 司倉生猪羔喂養糠太穀變通冊 12卷內 1卷 鄕廳上 五禮儀 1秩 18卷 紙筒庫上 三綱行實┐ 各 7卷 七面 訓長敎訓次授 各 1卷 鄕校上 五倫行實┘ 紀效新書 7卷內 1卷 乙卯九月還推 同廳上 6卷 敎鍊廳上 忠孝經 1卷 鄕校上 兵將圖說 1卷 敎鍊廳上 訓義小學大全 10秩 鄕校上 訓義小學諺解 5卷 鄕校上 五子近思錄 4卷 鄕校上 典錄通考 6卷 紙筒庫上 忠烈祠志 2卷 忠烈祠上 鰲山名人錄 1卷 忠烈祠上 明義錄 3卷 鄕校上 續儀 2卷內 1卷 禮房授 1卷 鄕校上 兵學指南 2卷內 作廳上 1卷 敎鍊廳上 綸音 10卷內 1卷 鄕校上 7卷 各面上 1卷 作廳上 1卷 鄕校上 冊封綸音 14卷內 10卷 各面上 1卷 鄕校上 1卷 梵魚寺授 1卷 鄕校上 1卷 作廳上 綱目 76卷 鄕校上 綸音本秩冊 1卷 入盛櫝子 鄕校上 丙申至乙卯 五倫行實 4卷 鄕校上 鄕禮合編 1秩 2卷 鄕校上 奎章全韻 1卷 鄕校上

	忠烈祠志册板 書院上 七書 1秩 具諺解 鄕校上 書院上 鄕校厘弊節目册 2卷內 1卷 鄕校上 1卷 禮房上 斥邪綸音册 12卷內 1卷 作廳上 11卷 各面 分授 金文正公文集 8卷 自巡營來 鄕校上 排朔册 1卷 本庫上 幷養庫節目册 1卷 鄕校上 醬塩太節目册 1卷 守城廳上 僧將及山城四門直料布節目 1卷 官上 會餘耗穀區處節目册 2卷內 官上 1卷 鄕廳上 守城廳利銀別備節目册 2卷內 2卷 官上 1卷 鄕廳上 各面牛稅畓成案節目册 1卷 收稅所上 開市改節目册 1卷 書契所上 商譯蔘貨改節目册 1卷 書契所上 義旅案 2卷內 1卷 鄕廳上 1卷 本庫在 壯旅案 1卷 鄕廳上 正朝戶長路貰變通節目册 1卷 鄕廳上 每年習操時犒饋所 2卷內 1卷 鄕廳上 1卷 北面都洞上 吏奴邑倉各色每年八月輪回差役事節目册 1卷 鄕廳上
임실현 중기	任等內備上/申等內備上/徐等內備上/權等內備上/洪等內備上/具等內備上/ 李等內備上/鄭等內備上/金等內備上/朴等內備上/趙等內備上/等內備上 申等內備上: 五禮儀 上下卷 徐等內備上: 近思錄 4卷 無刑體 等內備上: 小學 全秩 具諺解 內賜斥邪綸音 1件 鐲役綸音 各面里播給 1卷 官上 加髢申禁事節目册 各面里播給 1卷 官上
순천군각장중기	雅誦 柳等內時上 官入於內衙 燒燼 鐵甲冑 13件 陸軍器上 樓上庫鎖金 4件 官上
동복현각고물종중기	印床 1 又1鹽院上
고산현도중기	趙等備上: 玄谷板 137立, 四書諺解 鄕校上 小學 4卷 鄕校上, 警民編 2卷內 1卷 鄕校上 1卷 官上 鄕員節册 2卷內 1卷 鄕校上 1卷 官上 鉛丸 1,440介 丁巳受來上 火藥 35斤 丁巳受來上
장수현중기	軍案櫝 1坐 東軒上 輿地勝覽 1卷 校上
윤등내중기	等內別備上/各等內備上/丁巳監營備上/朴等內備上/府上書册秩/魚等內備上

김해부도중기	藥升貳拾伍箇, 火藥貳百斤, 石硫黃伍拾伍斤: 陸陳軍器來上 印床壹雙, 各倉開金櫝壹坐, 行用印家壹坐, 印皮囊壹, 印方席貳, 各軍案入盛櫝子壹坐, 筆硯壹坐: 東軒上
본각역삼등마중기마적안	(표지)戊午十二月日 本各驛三等馬重記馬籍案上
신유년 합천향교중기	鄕案櫃一坐 俱鎖金奉安于祭器庫懸板上
서재신문중수기[85]	書冊目錄 史略六卷 通鑑十一卷 大學一卷 (…) 鄕禮合編二卷 二倫行實圖四卷 三綱錄二卷 雅誦二卷 舊官時官上

〈표3-2〉는 중기에서 上[자]의 용례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모든 중기를 표본조사 하지 못한 한계점은 있으나 지역을 불문하고 서책, 문서, 목판, 인신, 지도, 화약, 무기 등이 지방관청, 향교 등지에서 관리・보관되었다. 이런 물품의 관리상황과 소재처 기입 방식은 鄕校上, 官上, 陸軍器上, 鄕上, 道東上, 東軒上, 宣化堂上, 紙筒上, 紙筒庫上, 敎鍊廳上, 忠烈祠上, 書院上, 禮房上, 守城廳上, 收稅所上, 鄕廳上, 北面都洞上, 書契所上, 面上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모두 구체적인 보관처+上자가 결합된 방식을 취하였다.

중기에 사용된 上자가 이두로 사용된 증례는 『萊府重記』의 윤음(綸音)이 대표적인 예이다. 윤음이란 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훈유의 성격을 가진 문서다. 즉 상부에서 하부기관으로 내려가는 행정절차가 따르기 마련인데, 『萊府重記』에 따르면 綸音 10권 중 1권은 鄕校上, 7권은 各面上, 1권 作廳上, 1권 鄕校上으로 기입되었다. 여기서 상(上)을 '-에 바치다'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한 고을의 하부 조직에 해당하는 향교, 각 면, 질청에서 윤음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윤음이란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옳지 못하다. 다만 이 윤음을 국왕이 동래부에 내렸고, 동래부에서는 각 7개의 면과, 향교, 질청에 각각 1건씩 보관하도록 송부하였다면 행정절차 및 문서의 성격에 부합된다.

다른 사례로 1881-1882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86] 되는 『훈련도감

84) 『래부중기』에 보면 義旅案 2卷內 1권은 향교에 보관하고(鄕廳上) 1권은 본부에 두도록(本庫在)한다. 같은 부분에서 표기상의 차이가 보이나 上과 在의 어감 차이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는 추후에 천착해서 살펴볼 부분으로 상과 재의 미묘한 차이가 밝혀진다면 문서 보관제도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36년 서재신문중수기」, 『고문서집성』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760-767면.

86) 남권희, 앞의 글, 2012, 78면.

중기』에 買得文記都封軸 등 매득문기 보관처를 "本色紙筒在"로 표기한 부분과 1859년에 작성된 『萊府重記』의 屯田田案의 보관처는 "紙筒庫在"라고 표기된 부분도 상(上)자의 쓰임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증례다. 이를 기존 紙筒上[지동자]와 비교하면 紙筒在와 紙筒庫在 모두 같은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차이는 上과 在 한 글자 차이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19세기 한성 및 지방에서 모두 在와 上이 동의어로 사용됐다.

이처럼 지방 관아에서 문안을 보관하던 곳의 명칭은 각각의 자료별로 구별되기도 하고, 활용/준활용/영구보존 기준에 따라 보관처가 나눠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자주 쓰는 자료는 선화당, 동헌과 같이 집무처와 가까운 곳에 두고 영구 보존을 해야 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두었는데 이는 모든 자료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1872년 은산현과 초산부 지도에서도 확인된다.

은산현 지도	초산부 지도
	

〈그림 5〉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지동고[紙筒庫]

지동고에 어떤 문안을 보관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관청, 향청, 장청(將廳)과 같은 지방 자치기구나 내아(內衙)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지동고에 보관하던 문안은 현용문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관하던 형태는 해남현 사급입안 1번 사례와 같은 ①원본 문서를 점련한 형태이거나 민장치부책과 같이 ②원본을 등서한 등록 형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김현영은 조선시대에 문서의 가치에 따라 문서를 분류하여 보존 여부를 결정하였으

나 원문서 자체를 보존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봤다.[87] 그 예로서 『牧綱』의 내용 중 "청원서의 대략적인 내용 및 판결문은 등서하여 원장은 청원한 백성에게 돌려주고 민장치부책은 관에 비치해두어 판결을 받지 못하여 다시 청원하는 사람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88] 그러나 '民訴之大旨'나 '제사(題辭)'는 최종판결문을 뜻하지는 않는다. 모두 청원이나 소송의 중간 단계에서 생성되는 문서이다. 이런 점에서 민장치부책은 지방관에서 행정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로 보관과 발급 중간적 성격을 가진 자료로 생각된다.

따라서 단정하여 지방관에서 보관된 문안의 형태를 구분하기보다는 각 자료마다 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전제에는 김현영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문서마다 가치를 매겨 분류하고 보존하였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앞서 살핀 『승정원일기』와 노 자룡의 소지처럼 후일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문안이 최소 50년 보관된 사례도 다각도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이상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사용된 上[자]의 용례를 바탕으로 관문서 보관처와 그 형태의 단면을 살펴봤다. 上이라는 글자가 "보관"이라는 뜻을 가진 이두임을 의궤, 연대기사료, 등록, 고문서에서 확인함으로써 官上, 營上, 校上 등의 어휘가 紙筒上와 마찬가지로 이두로써 사용된 용어였음을 되짚어봤다.

기존에 上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지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두사전이나 선행연구에서 上의 의미가 수록되지 못하면서 무심코 지나친 경우가 많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사료 위에서 이 글자를 고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上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현상과 문서보관 제도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영조국장도감의궤』·『정조국장도감의궤』, 법전류, 『성종실록』을 토대로

87) 김현영, 앞의 글.

88) 『牧綱』. "民訴之大旨及題辭, 一一謄書後, 原狀出給民, 以爲後考. 或有不得題, 改名更訴者, 一日再呈者, 未能周察. 故每每考閱前日之謄書, 則所得不少矣."

적어도 15세기부터 18세기에 上, 在, 藏이 문서와 관련해서는 의미상 동의어로써 사용되었음을 살펴봤다. 上은 기록물 비치(備置)와 관련하여 공사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上이 보관의 의미로 사용된 문헌의 성격은 ① 조직 및 운영의 성격 ②개인의 권리 혹은 신원 증명 ③민정과 관련하여 풍습상 긴요한 사안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방관아에서 문서 보관과 관하여 紙筒[지동]과 葉作[엽질]은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해남윤씨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사급입안을 통해 지동 안에 엽질이 보관되었음을 살필 수 있는데, 그 표기 양상은 紙筒上로 나타났다. 즉 엽질과 上은 후일에 증빙의 목적을 가진 자료를 보관할 때 쓰였다. 따라서 上과 보관처는 불가분의 관계로 지방 관아의 지동에 보관된 엽질은 주로 활용 문서로 보관형태는 ①원본 문서를 점련한 형태 ②원본을 등서한 등록 형태로 구분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각사등록』,『경기감영각방중기』,『고산현도중기』,『공사항용록』,『광주목중기』,『국조보감』,『김해부도중기』,『내각일력』,『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동복현각고물종중기』,『래부중기』,『목민심서』,『본각역삼등마중기마적안』,『비변사등록』,『사축서사목』,『삼국사기』,『서재신문중수기』,『속대전』,『순영방계의책』,『순천군각장중기』,『승정원일기』,『신보수교집록』,『신유년 합천향교중기』,『신증동국여지승람』,『심도중기』,『영조국장도감의궤』,『오주연문장전산고』,『유서필지』,『윤등내 중기』,『이등내 고산현중기』,『이문잡례』,『일성록』,『임실현중기』,『장수현중기』,『전율통보』,『정조국장도감의궤』,『조선왕조실록』,『증보전록통고』,『황화집』,『훈련도감 중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고문서집성』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_____,『고문서집성』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_____,『고문서집성』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_____,『고문서집성』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_____,『고문서집성』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_____,『고문서집성』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_____,『고문서집성』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_____,『고문서집성』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권이선,「조선시대 결송입안의 유형별 특징과 발급양상」,『고문서연구』제52호, 한국고문서학회, 2018, 205-234면.
김동석,「엽질에 관한 일고찰」,『장서각』제1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11-132면.
김종훈,『한국 고유한자 연구』, 보고사, 2014.
김현영,「조선초기의 전준에 대하여: 1469년 전양지 처 하씨 점련문기를 중심으로」,『고문서연구』제9호, 한국고문서학회, 1996, 123-138면.
남권희,「중기자료 분석에 의한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기록관리」,『사회과학』제14집,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소, 2002, 57-99면.
_____,「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서지학연구』제57집, 한국서지학회, 2014, 5-50면.
남권희 외,「조선후기 동래부의『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서지학연구』제60집, 한국서지학회, 2014, 245-286면.
박성종,『조선초기 고문서 이두문 역주』, 서울대 출판부, 2006.
_____,『조선전기 이두연구』, 역락, 2016.
심경호,「이두식 변격한문의 역사적 실상과 연구과제」,『어문논집』제57호, 민족어문학회, 2008, 201-232면.
오창명,「조선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장세경,『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1.
조계영,「외규장각의 기록물 보존과「외규장각형지안」의 특징」,『고문서연구』제46호, 한국고문서학회, 2015, 113-152면.

조미은, 「19세기 해유문서와 증기에 관한 사례연구」, 『고문서연구』 제40호, 한국고문서학회, 2012, 179-211면.
진유라, 「증기를 통해 본 호남지역 군현의 기록물 분석」, 『서지학연구』 제63집, 한국서지학회, 2015, 303-336면.
최동언, 『조선식한문연구』, 사회과학원, 2009.
홍기문, 『리두연구』, 한국문화사, 1957.

【Abstract】

The Usage of the Character Shàng (上) and Document Protection Systems as Revealed by Ancient Korean Literature

Kwon, E-Sun*

By studying the character shàng (上) that was very widely use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e following paper derivatively examines the purpose behind the protection of documents of the time. The original meaning of "shàng (上)" was only understood in one dimension that it was limited to. It was commonly recognized as 1) high 2) to raise, to present a gift to a king, or 3) a particle to indicate space, methods in which the word is most frequently used in Chinese writing. However, "shàng (上)" was also sometimes pronounced as "zi [上]", and used as a word meaning to "keep" or "safeguard." This can be identified in various annals such as chronological feeds, archives, royal books, and registration documents.

The range for the application of "zi [上]" is very wide, as shown in phrases such as one who holds a position of honor, schooling, running a business, stationary holder, and scholarly chamber. These expressions are indicative of a method that integrates the specific name of the building where scripts were kept, and the character "shàng (上)". There were experts who, based on the *Yoo-Seo-Pil-Ji* or experience, used to believe that "shàng (上)" possessed the meaning of "keep," but were unable to trace it back to its historic significance or system and were concluded as having gone too far. At the fundamental level, its meaning was not included in the Idu script dictionary and was therefore excluded from the original Idu script research on many occasions, and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later on could not ascertain the truth of the character. Therefore, there has been a number of cases in which mistakes have been found in documents verifying the undoing of registration, Ilseongnok: Records of Daily Reflections, as well as recent translations of ancient documents.

All vocabulary contains the historical context up until the word's usage. Therefore,

* Ph. D. student, Dept. Diplomatics and Bibliography,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rrors in translation originate from the in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Though it is difficult to definitely conclude that all official papers were stored in the government during the Joseon Dynasty, tradition tells us that the necessity and mandate over their safekeeping were acknowledged. And this was expressed using the character "zi [上]," which was utilized from the late Koryo to late Joseon Dynasty.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at "shàng (上)" is an Idu character based on Idu form collections and various examples, and illustrate its transliterations and significance.

Keywords: zi (上), Idu, Joseon dynasty the document box, jidong (紙筒), Yeobjil (葉作).

접수일: 2019.03.29.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17.